

## 대구광역시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
----------	-----

제출일자 : 2007. 7. 2.  
제출자 : 달성군  


###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전주.수도관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 점용료 적용 시설과  
의 형평성 문제 제기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도로법시행령(2007.1.5.) 및 대  
구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2007.4.30)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  
정코자 함.

### 3. 주요내용

-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있는 경우의 감면조항 삭제
-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조정(별표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
  - 정액제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산정기준 금액 약38%인상
    - 전주, 가로등, 공중전화,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송전탑 등
    - 배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유관, 송열관, 전력구, 통신구 등
    - 지중정착장치(어수앵커), 암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공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현수막 등
    -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 돌출간판 산정기준 감액(15,000원 → 9,900원 / m<sup>2</sup>.1년)

#### 4. 참고사항

- 근거법령 : 도로법 제43조(점용료의 징수)
- 입법예고 : 2007. 6. 8 ~ 2007. 6. 27 (특이사항없음)
- 개정 조례안 : 불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 대구광역시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호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제7호 【별표1】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  
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 등  
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  
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를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  
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1】 중 제1호 내지 4호 및 제8호, 제10호는 각각 복임과 같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별표1】

정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정 용료 (원)
	정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기지국, 종합 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기 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정용면적 $1\text{m}^2$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지름 0.1미터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			400
	지름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			850
	지름 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			1,250
	지름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			1,650
	지름 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			2,050
	지름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3,100
	지름 2.0미터 초과 3.0미터 이하			5,200
	지름 3.0미터 초과			7,250
지 출 정 착 장 치 (어스앵커), 암 거,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것	지름 0.1미터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			600
	지름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			1,250
	지름 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			1,850
	지름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			2,500
	지름 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			3,100
	지름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4,600
	지름 2.0미터 초과 3.0미터 이하			7,750
	지름 3.0미터 초과			10,850

정용률의 종류			기준 단위		정용료(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150
		기타	표시면적 1㎡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9,90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50
		기타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41,400
		기타			20,700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u>진, 출입로</u>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평	1일	15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u>농업 및 식물 재배, 어업 및 어획물위탁판매</u>	점용면적 1평		토지가격에 0.01 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와의 공작 물, 물건 및 시설	주택		1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점용료의 산정)</p> <p>①~②(생략)</p> <p>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p> <p>2. (생략)</p> <p>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p> <p>4. ~ 6. (생략)</p> <p>7의. 별표1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총열관에는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 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암카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p>	<p>제3조(도로점용료의 산정)</p> <p>①~②(생략)</p> <p>1.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p> <p>—————</p> <p>—————</p> <p>2. (현행과 같음)</p> <p>3. (삭제)</p> <p>4. ~ 6.(현행과 같음)</p> <p>7의. 별표1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p>